

가평마장초등학교 회계 세입·세출 예산서

예산 총칙

예산구분 : 추경3회

예산안확정일자	2020-09-28	예산액	1,365,593,000
--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

제1조 2020학년도 가평마장초등학교회계 세입·세출예산총액은 세입·세출 각각 1,365,593,000원으로 하며 세입·세출의 명세는 “세입·세출예산서”와 같다.

제2조 2020학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표 “명시이월비 명세서”와 같다.

제3조 회계연도 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, 학교발 전기금 전입금 또는 선택적 교육수입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,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추후에 보고한다.

제4조 ①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경기도공립학교회계규칙 단서규정에 의하여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.

1. 교원연구비, 관리 및 직책 수당, 겸직수당
2. 학교회계 직원의 인건비
3. 각종 공과금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반환을 위한 이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